

#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박상봉\* · 김명희\*\*

<목 차>	
I. 서론	2. 우리나라 세법
II. 이론적 배경	IV. 기업인수·합병관련 조세제도의 개선안
1. 합병과세 개요	V. 결론
2. 선행연구	참고문헌
3. 합병공시 현황	Abstract
III. 기업인수·합병관련 세법	
1. 미국 세법	

## I. 서론

10여 년 전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천억 달러를 넘나들며 곧 미국경제가 침몰할 것 같았다. 또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실업 문제와 저성장으로 이를 있는 대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던 구미의 기업들은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합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21세기에는 업계 1위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때보다 가중될 것이다. 업계 1위가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기업 인수·합병(이하 M&A)가 보편적이다.

특히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하여 비슷비슷한 규모의 업체가 난립할 경우에는 2개 업체 간 M&A는 확실히 1위가 되는 방법이다. 앞으로는 M&A, 전략적 제휴, 사업철수 등을 통해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이다. 다수의 기업이 몰락하고 소수의 살아남은 기업만이 시장을 지배할 날이 멀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M&A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한계 사업이나 경쟁력이 뒤지는 사업부문을 매각함으로써 핵심역량

\*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회계학부 전임강사

\*\* 동아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외부강사

을 강화할 수 있다. 매각 자금을 소수 핵심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기업인수·합병 전략에서 찾는다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래의 경제대국의 대열에 가세할 수 있을 것이다.

M&A라는 용어는 원래 미국에서 사용하는 Mergers and Acquisitions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합병(Mergers) 및 매수(Acquisitions)로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포함하는 다의적인 용어로서 경제적·학문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배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개인 또는 단체, 회사가 다른 회사 자산의 소유자가 되거나 경영지배권(control of management)을 획득함으로써 그 회사의 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의 전부를 말한다. IMF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실제로 추진 중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sup>1)</sup>

일반적으로 기업 간의 합병은 기업이 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기업합병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합병으로 인한 비용절감이나 기업위험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은 기업합병이 자유롭게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전반에 걸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모든 경제주체가 궁극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합병이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합병의 또 다른 목적 중의 하나는 재무보고의 당기순이익을 조정하거나 조세를 절감하는 것이다. 만일 기업 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시너지효과가 창출되지 않고 단순히 합병당사자들의 재무보고 목적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줄이는 목적으로만 이용된다면 경제전반적에 걸친 부(富)의 합리적 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시너지효과를 목적으로 한 합병은 장려하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병은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병관련 조세규정들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1)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의 규모나 상장기업의 수에 비해 M&A 사례가 결코 적은 편이 아니다. 1995년 이후 3건의 공개매수가 행해진 이후 2003년 19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19건의 상장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합병과세 개요

합병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느냐에 따라 활성화의 정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합병관련 거래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산의 거래 및 처분 등과 관련한 세금 문제일 것이다. 그동안 합병과세제도는 기업의 구조조정차원에서 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병의 과정에서 과세 문제가 가능한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합병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이유는 법인의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투자가는 사업주체에 대한 지분을 주식소유의 계속이라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업의 합병에 관한 과세체계가 대폭정비된 것은 경제위기의 발생 직후인 1998년 말의 세법개정에서였다. 그동안 합병과세제도는 부분적인 개정에 그쳐 왔으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합병차익, 청산소득, 영업권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게 되었다. 법인세법 제44조에서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법에도 비과세 합병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병과세제도의 대폭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합병세제는 비과세 합병과 일반 합병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된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는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실질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 선행연구

Gilson, Schples & Wolfson(1988)은 기업합병은 순수한 세금효과를 가져오며, 조세제도가 기업합병을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금이익은 기업합병을 통하여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세문제가 기업합병 활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요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박성배·윤태화·오문석(1999), 이은상과 이준규(2000), 김진수와 황재(2001), 최명근·박정우와 김완석 등(2001)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세법을 보면 합병으로 인하여 계상되는 매수기업의 합병평가차익과 피매수기업의 청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원칙으로 하되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세법은 매수기업이 인수하게 되는 피매수기업의 순자산을 공정가치 혹은 장부가치가 아닌 임의의 승계가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공정가치가 아닌 승계가액은 매수기업이 장기적인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승계가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세법은 과세이연이 충족하는 합병에서는 합병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합병대가로 지불하는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의 액면이라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임의적 가치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합병평가차액이나 청산소득을 산정하거나 피매수기업 주주들의 소득을 산정할 때, 경제적 실질과는 거리가 먼 왜곡된 가치를 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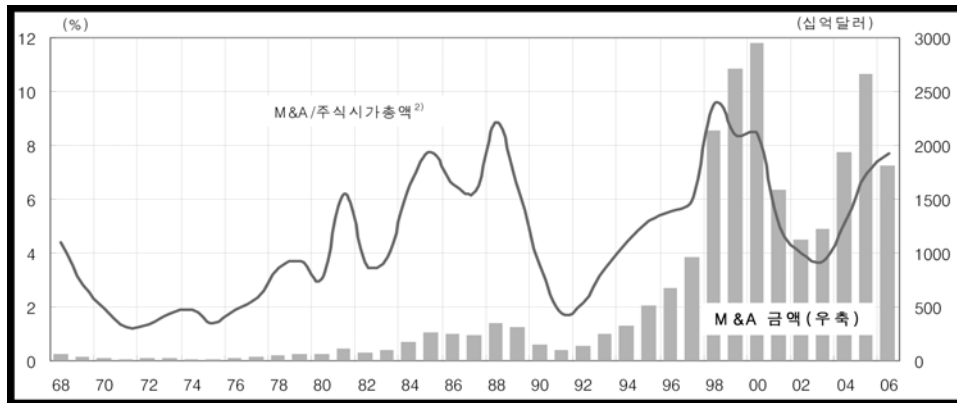
신현걸·정재연(2005)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1건의 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 합병사례 중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합병은 단 한건도 없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지만 101건의 합병거래 중 지배·종속회사 간의 합병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가 44건이며, 기타의 매수기업결합의 경우에도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사례는 단 10건에 불과하였다. 이는 실제 합병이 이루어질 때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바와 달리 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로 인한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모든 합병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합병이 실질적인 조세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기업합병은 조세제도가 합병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이고, 최근의 연구는 합병관련 세법이 강화되고 있지만 특히 현행 과세특례요건이 형식적이고 관대하므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과세특례요건을 보다 더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M&A의 동향

#### 3.1 세계적인 추이

<그림 1> 지난 1990년대 중반 연간 1조 달러를 넘는 M&A가 2003년에 3조 달러에 달했으나 IT버블 등으로 2001년 이후 위축되었다가 2003년 하반기부터 확장국면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 1) 공표일 기준, 철회된 거래 제외. 2006년은 상반기 실적  
 2) 미국 기준  
 자료 : Bloomberg

<그림 1> 세계 M&A 추이

#### 3.2 우리나라의 추이

<표 1> 2005년 전체 기업결합의 건수는 658건으로 전년도(749건)이 비해 감소했으나 금액으로는 19.2조 원으로 전년(16.2조 원) 대비 18.5%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결합은 <표 2>와 같이 84건으로 5.5조 원의 금액으로 모두 전년(125건, 6.3조 원)도에 비해 감소를 보이고 있다

<표 1> 국내 기업의 기업결합 건수 및 금액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건수	486	557	703	644	602	589	749	658
금액(조 원)	125.0	80.0	30.7	13.5	15.3	13.7	16.2	19.2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lt;표 2 &gt;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결합 내역

구분	인수건수 (건)	전체건수 대비 비중(%)	인수금액 (조원)	전체금액 대비 비중(%)
2000	114	16.2	2.5	8.1
2001	102	15.8	1.6	11.5
2002	90	14.9	1.3	8.5
2003	103	17.5	3.5	25.5
2004	125	16.7	6.3	38.9
2005	84	12.8	5.5	28.6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Ⅲ. 합병관련 세법

#### 1. 미국 세법

세법은 M&A 당사자의 행동을 규제하는 원리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M&A 관련거래는 세법의 규정 여하에 따라 경제적 득실이 크게 좌우된다. M&A가 성립하는 것은 시도하는 측이 그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법의 변경에 의해 M&A 관련 특정 거래유형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거래 자체가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세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종래 없었던 새로운 M&A 거래나 기법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세금과 세율을 살펴보면 법인세의 경우에는 일반소득과 자본소득에 34%의 세율을 적용하고, 개인세는 일반소득과 자본소득에 2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는 미국 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배분되지 않은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며 소유권이 바뀌므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기존의 손실을 상쇄하게 된다.

개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에는 개인소득세가 적용되며 기업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다르게 적용된다. 기업이 다른 미국 내 기업으로부터 얻은 배당금 중 70%까지는 면세의 대상이 되며 계열내의 상호 배당금 지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 기업이 외국투자자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의 30%는 원

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이중과세가 되면 15%로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이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인수가격은 세금 부과할 때 인수자의 비용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자산이나 주식을 매도하는 측에는 어떠한 이익에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2. 우리나라 세법

M&A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M&A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증권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세법 등의 관련 법규들을 개정하고 있다. <표 3>과 같이 M&A와 관련된 주요한 세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있다.

세무상 피합병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승계하여도 되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도 된다. 그러나 합병법인이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공정가치(정상적인 시장가치)로 평가하여 인수한 것으로 생긴 합병차익은 이익금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합병차손에 대한 처리는 합병차손의 발생원천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첫째는 합병차익의 경우와 같이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기 때문에 지불한 금액이 커서 생기는 합병차손의 경우는 해당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만큼이 과세대상이 된다. 둘째는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갖는 무형의 가치, 즉 영업권에 의하여 지불한 금액이 커서 생기는 합병차손의 경우는 이를 영업권 취득으로 보아 5년간 균등상각하여 손실금에 합산할 수 있다. 셋째는 앞의 경우와 같이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는 합병차손의 경우는 이를 비록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상각한다고 하더라도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합병과 관련된 소득세법상의 규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규정이다. 의제배당이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출연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증권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배당 소득이 있을 경우 합병법인은 소득세는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

병 당시 법인의 대주주가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합병일에 상대방 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는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불공정한 합병을 통한 증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 및 관련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기준 합병비율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합병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밖에 합병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바뀔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합병으로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영업양수도의 경우도 불공정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관련 법규가 적용되고 신규자산의 취득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록세가 적용된다. 영업양수를 한 법인의 경우 합병의 경우와 같이 복잡한 처리가 필요 없이 양수된 가액으로 자산·부채금액을 확정시키면 된다. 그러나 영업양도를 한 법인의 경우는 현행세법에서는 현장부가액고 양도금액의 차이만큼 법인세가 과세될 뿐 아니라 양도물건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비상장주식 등일 경우 특별부가세(세율 20% 내지 4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주식거래에 의한 M&A의 경우는 매매대상주식이 상장주식(중소기업의 KOSDAQ 등록주식은 포함되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은 제외 됨)인 경우는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15%)와 농어촌특별세(양도가액의 0.15%)만 부담하면 되나 그 외의 경우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는 특별부가세(20%), 개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20%, 중소기업의 경우는 10%)를 부담하고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5%)의 부담도 증가한다.

주식거래에 의한 M&A의 경우도 거래가액이 시가 또는 상속세법상의 평가에 의한 기준금보다 현저하게(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인수자와 매도자가 특수한 관계인 경우는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는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기부금은 세무상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표 3> 합병과세와 관련한 세법 현황

구	분	내	용	근	거
인수기업 (합병기업)	법	인	합병후 최초사업년도 중간예납	법인세법 63조 1항	
			합병차익세무	법인세법 44조 1항 2호	
			합병차손세무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8	



		피합병법인 세무조정사항 승계	증자소득공제 등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 승계	법인세법시행령 120조
		승계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법인세기본통칙 23-26
		특별부가세	법인세법 부칙 제3조
		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41조의 3항 제3호
개 인	불공정합병에 대한 증여세과세	상속및 증여세법38조, 동령 28조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소득세법 17조 2항 5호(개인주주) 법인세법 19조 3호(법인주주)	
피인수기업 (인수대상기업)	법 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8조 ②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80조 1항
		특별부가세	법인세법 부칙 제3조
		확정신고,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7...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조 2항
	주 주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17조 2항(개인주주) 법인세법 16조 5호(법인주주)
		불공정합병에 대한 증여세과세	상속 및 증여세법 38조, 동령 28조

#### IV. 기업인수 · 합병관련 조세제도의 개선안

IMF 이후 급격한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기업구조조정 관련세제가 대폭 보완 · 정비되었다. M&A의 추이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는 물론 국내기업들 간의 합병이 활발히 이루지고 있기에 이에 관련한 세법이 중요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세제개편에서는 합병 · 분할 평가차익의 과세이연 대상자산을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고, 합병 시 발생하는 중복자산의 처분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세제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기본적인 틀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특히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대한 세제지원방법에 대하여 중점논의 하고자 한다.

##### 1. 청산소득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은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

하게 된다.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sup>2)</sup> 즉 청산소득금액이란 합병대가에서 세무상 자기자본(순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피합병법인의 입장에서 청산소득금액은 미실현이익이 합병을 통해 실현된 것이다.

또한 합병을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 모두를 합병법인에 이전하고 합병법인 주식을 수령하여 이 주식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두 단계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본다면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순자산을 승계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차익이 청산소득금액인 것이다. 특히 문제점으로는 청산소득이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에서 우선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산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단, 합병대상 비율이 1:1인 경우는 제외된다.

현행법에서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일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 중 주식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과세이연하고 있다. 즉,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줄여주는 대신 이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전가시키고 그 중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함으로써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합병대가 중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합병대가의 경제적인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계산한 청산소득금액은 경제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과세입법론적 관점에서조차 전혀 의미없는 금액이 되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규정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시킨 후에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세입법론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실질적이지니 조세지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과 같이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병

2)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도로 구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절차상의 번거로움만을 초래할 뿐 실익이 없으므로 일본의 제도와 같이 청산소득금액을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 청산소득과세

구분	내용	처리방법	비고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합병법인에 승계됨</li> <li>• 다만 특수한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과세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기업으로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과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세임</li> <li>• 산업합리화 대상기간 합병 중 합병 및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간의 합병</li> </ul>	<p>법령 제127조 제2항</p> <p>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p>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소득 합병대가-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자기자본</li> <li>• 합병대가의 산정</li> <li>• 자기자본의 총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대가(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합병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주식의 액면가액</li> <li>b. 금전, 주식 및 출자이외의 재산 : 취득한 때의 시가</li> <li>c. 합병법인이 대납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등</li> <li>d. 포함주식 : 합병법인이 합병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주식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청산소득을 계산함<sup>3)</sup></li> </ul> </li> <li>= 사실상 납입된 자본금</li> <li>=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법인세환급금-이월결손금(합병한 날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공제 이월잉여금은 없는 것으로 봄)</li> </ul>	<p>법인세법 제80조 2항</p> <p>법인세법 기본통칙 5-1-8-43</p> <p>법인세법 제77조</p>

3) 국세청 유권해석 : 포함주식의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때에는 합병교부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2. 합병평가차익에 과세의 문제점

현행법에서는 상법<sup>4)</sup>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평가차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합병대가 중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한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나타나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대한 미실현이익을 스스로 평가증하여 승계한다면 이를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합병평가차익은 미실현이익이므로 합병시점에 이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법인이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을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합병평가차익이 미실현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인수합병준칙」에 따르면 매수기업결합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하고,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금액사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으로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평가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는 매수기업결합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유형가차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결산서상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더라도 세무상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매수기업결합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반드시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도록 강제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합병법인이 공정가액으로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면 세무조정을 통하여 이를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제459조 제1항 제3호

### 3. 의제배당 과세의 문제점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액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에서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즉,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부분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 중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익 또는 이익잉여금을 원천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본증가에 기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 주식을 처분할 경우와 비교할 때 주주의 유형에 따라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다.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일 경우 동 주식을 자내에서 처분하게 되면 당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이면 20%(중소기업은 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다. 그러나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대가를 수령하게 되면 배당으로 의제되므로 상장여부에 불문하고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거나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규정에 의하여 8%에서 35%의 세율로 누진과세(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됨)된다. 한편 법인주주일 경우에는 주식처분이익과 의제배당액이 모두 동일한 세율로 과세될 것이나 의제배당액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일부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므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과세가 오히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해 진다. 만일 의제배당에 비하여 주식양도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이 유리한 주주라면 합병 전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법인주주처럼 합병 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가 유리하다면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합병이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법에 의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일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가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된다. 이 경우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데 반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여 과세가 이연된 경우에는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주식양도차익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과세소득의 종류와 세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합병대가와 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이 본질적으로 배당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의제



#### 4. 과세특례요건의 재검토

<표 6> 과세특례 요건

구 분	내 용	비 고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li> <li>•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li> <li>•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li> </ul>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현실적으로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 합병사례 중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합병은 단 한건도 없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행연구에서 보면 실제 합병이 이루어질 때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바와 달리 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로 인한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모든 합병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합병이 실질적인 조세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현행 과세특례요건이 형식적이고 관대하므로 과세특례요건을 보다 더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세특례요건을 형식적으로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세특례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합병관련 과세체계를 보다 단순화시킴으로써 합병법인의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합병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지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할증발행의 경우 액면가액과 액면초과금액을 합한 총불입금액

## V. 결 론

최근의 세제개편 중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 시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M&A관련 제도도 소유권제한의 기준을 대폭 수정 완화가 됨으로써, 기업 간의 합병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합병 시 가장 바람직한 시너지효과를 목적으로 한 합병은 장려하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병은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합병과 관련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중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대한 세제지원방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청산소득금액, 합병평가차익, 의제배당 및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단지 합병에 관련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선방안은 합병 외에 추가적인 문제점을 갖고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발맞추어 합병·분할·현물출자 및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공정거래위원회, ftc. go. kr 자료집
2.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2004년, 2005년, 2006년 각권
3. 김낙희(2006), “2006년 세제개편(안),” 재정포럼 2006년 9월호
4. 김진수·황국제, 2001년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5. 백운찬(2004), “중점조세정책 방향 및 2004년도 세제개편안,” 재정포럼 2004년 9월
6. 변상구(2005), “2005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 재정포럼 2005년 9월
7. 신현걸·정재연(2005), “우리나라 기업합병의 현황분석을 통한 합병회계 및 합병세제개편 방안,” 회계저널 제14권
8. 안중범(2006), “기업관련 상속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 발표자료
9. 이은상·이준규(2000), “합병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9권
10. 장근호(2005), “2004 미국의 세제개편과 향후 동향,” 재정포럼 2005년 3월
11. 정찬형(2004), 상법강의, 신영사
12. 재정경제부(2006), “200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13.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6), “기업관련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상장협 연구보고서 2006년 5월
14. R.L. Gilson, M.S. Scholes and M.A. Wolfson(1988), “Taxation and the Dynamics of Corporate Control: the Uncertain Case for Tax Motivated Acquisitions: in J.O. Coffee, Jr. L. Lowenstein and S.R. Ackerman(eds.), The Impact of the Hostile Takeover, Oxford University press.
15. Erickson, M.(1998), “The Effect of Taxes on the Structure of Corporate Acquisi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6, pp.279~298.
16. Lustig, Eric A.(1979), “The Emerging Role of the Federal Tax Law in Regulatoining Hostile Corporate Takeover Defeness: The New Section 5881 Excisen Tax on Greenmail,” *University of Florida Law Review*, Vol.64.
17. Scholes, Wolfson, Erickson, Maydew and Shevlin(2001), *Taxes Business Strategy*, Prentice-Hall.
18. Tuck School of Business at Dartmouth, Note on Leveraged Buyouts, 2003.

## Abstract

### A Way of Improving Merger-related Taxation Systems

Park, Sang-bong\* · Kim, Myung-hi\*\*

Concerning this nation's M&A system, it is expected that standards of limitation on ownership is considerably modified and alleviated. This would allow companies to freely merge with each other, raising the efficiency of the whole national economy and ultimately benefiting all economic subjects. Another goal of business merger lies in adjusting net income or reducing tax amount. The income and the amount are to be financially reported. If merger between companies does not create any synergy effect, but just contributes to net income increase or tax reduction for the purpose of the parties' financial reporting, it might distort a rational distribution of wealth over all facets of economy. Merger whose goal is to create the most desirable synergy effect should be positively encouraged, but that whose goal lies in tax avoidance needs to be strongly restricted.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how to improve this nation's merger-related taxation system.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investigated problems of existing tax supports to merger, which meets related taxation requirements, especially in terms of liquidation income, appraisal profit from merger, fictitious dividend and requirements for taxation. Among the problems, the study found, the biggest thing was that liquidation income or deficit carried forward, if any, is subject to be prior deducted from surplus, so the income is likely to generate. To raise the consistency of this nation's taxation on business restructuring, existing local systems in regard to merger, division, investment in kind and dividend-exclusion method need to be reconsidered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ation system

Key Words : Mergers related taxation, liquidation income, appraisal profit from merger, fictitious dividend and requirements for taxation, requisite special case taxation

---

\* Full time Lecture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Eui Univ.

\*\* Lecture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A Univ.